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10
----------	-------

발의연월일 : 2025. 12. 30.

발 의 자 : 이병진 · 주철현 · 임호선
윤준병 · 어기구 · 문금주
문대림 · 이원택 · 서삼석
임미애 · 송옥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및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해양 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함 (안 제40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년”을 “3년”으로, “7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년”을 “2년”으로, “5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7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7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 략)	제40조(벌칙) ① ----- ----- <u>3년</u> ----- ----- <u>3천만원</u> ----- -----.
② 실시계획의 승인 ·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u>5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5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 ----- ----- <u>2년</u> ----- ----- <u>2천만원</u> ----- -----.